

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1. 3. 11.
- 제출자 : 이주한 의원 외 3명
- 회부일자 : 2021. 3. 12.
- 상정 및 의결 :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1. 3. 23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이주한 의원)

가. 근거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제1항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
- 「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
- 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

나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과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성완)

-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□ 조례안 수정가결 내역

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 ② <u>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 략) |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 <u><삭 제></u> |
| 제8조(신변안전 보호) ① <u>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<u>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u> | |

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 ~ 제11조 (생략)

제8조 ~ 제10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